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수영구 고시 제2016 - 80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제1조(목적)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자와 낙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어선) 및 낙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① 선외기 및 레이더 미설치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 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

②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선내기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낙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한다.

③ 제2항 단서의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낙시어선은 야간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1호에서 정한 어로·항해 금지해역에서의 어로·항해 금지 시간(22:00~03:00) 준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 어업무선국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3.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 외 야간 출입항 시에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4. 제1호에 따른 어로·항해 금지시간 중 연안에서 3마일 이내 어로 및 조업 금지

- 제4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 승객이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만법에서 지정한 부산항 묘박지 내의 해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 ③ 낚시어선업자는 부산광역시 연안의 모든 도서 및 갯바위,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치구·군별 낚시승객의 하선을 허용하는 도서를 제외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을 승선시켜 안내할 수 있는 도서 및 육지와 연결하지 아니한 인공 구조물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낚시객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군별로 야영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야영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낚시객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이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VHF(DSC) 통신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2.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

- 제5조(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할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선주·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 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또는 VHF(DSC)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의 통신 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다만, 출입항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통신 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각 응하여야 한다.
4.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 승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마.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 바.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사.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입하는 행위
7.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영구 고시 제2013-61(2013.09.02)호는 폐지한다.

[별표]

낙시어선의 승선 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방법

1. 게시방법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흑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백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장소

당해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문

[붙임]

승선정원 명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3.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4.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낚시객은 낚시어선 승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에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마.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 바.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사.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입하는 행위
7.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